

제307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「임실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 합니다.

2021. 3. 15.

임실군의회 의장



## 1. 개정이유

상위법령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한 감면사항 중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감면기한을 연장하며,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는 사권제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상위법 이관에 따른 조문 삭제

-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(안 제3조)

\* 2021년부터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제38조제4항제2호에 경감률 직접 명시

### 나. 서민생활지원 및 지역개발을 위한 감면기한 3년 연장

- 1) 문화재에 대한 감면(안 제4조)
- 2) 지역특산물생산단지에 대한 감면(안 제5조)
- 3)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(안 제7조)
- 4)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(안 제9조)

※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(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)제1항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, 세액감면 및 세액 공제

**다.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 신설(안 제9조의2)**

- 장기미집행 실효예정인 도시공원이 공원으로로서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고 이에 따른 부동산 소유자의 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도시공원의 재산세 감면에 준하는 ‘도시자연공원구역’의 재산세 감면조항 신설

**라. 법제처의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게 조문 정비**

임실군 조례 제 호

## 임실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**규정함으로써**”를 “**규정하여**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아니한**”을 “**않은**”으로 한다.

**제3조를 삭제한다.**

제4조제1항 중 “**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**”를 “**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**”로, “**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**”을 “**2023년 12월 31일까지 100분**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2020년 12월 31일**”을 “**2023년 12월 31일**”로 한다.

제7조 중 “**2020년 12월 31일**”을 “**2023년 12월 31일**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**2020년 12월 31일**”을 “**2023년 12월 31일**”로 한다.

**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**

제9조의2(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·지정된 토지·건축물·주택(각 용어의 뜻은 「지방세법」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)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.

제18조 중 “**아니한**”을 “**않은**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



감면)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  
른 재산세 (「지방세법」 제112조  
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)의  
“조례로 정하는 율”은 2017년 1  
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  
지 100분의 50으로 한다.

제4조(문화재에 대한 감면) ① 「전  
라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」에 따  
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  
해서는 재산세(「지방세법」 제1  
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.  
이하 “이 조”에서 같다)를 2020년  
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, 같은 조  
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  
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  
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  
분의 50으로 한다.

② (생략)

제5조(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 
감면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
에 해당하는 사람이 「농업·농  
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50조  
제1항 또는 「수산업·어촌발전  
기본법」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  
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0년 1

제4조(문화재에 대한 감면) ① 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202  
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---  
-----  
-----  
----- 2023년 12월 31일까지 1  
00분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 
감면) ① 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2023년 12





구역으로 변경·지정된 토지·건축물·주택(각 용어의 뜻은 「지방세법」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)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.

제18조(감면기한의 특례)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다.

제18조(감면기한의 특례) -----  
----- 않은 -----  
-----  
-----.